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연사비 및 여비 지급 시행 세칙

2018년 6월 1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의 연사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한국전기화학회의 여성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공청회, 집회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참가하는 사람에게 여성위원회에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라 함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회의로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공청회, 집회 등을 말한다.
2. “회의 자문료”라 함은 본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사람에게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연사비 등”이라 함은 토론회 등에서 강의, 주제발표 등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여비 등”이라 함은 토론회 등에서 토론회 등 주관, 좌장, 토론 등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4 조 (연사비 등의 지급) 본회는 제2조에 의한“토론회 등”에 주제발표 등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연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연사비(강사료) 지급 기준

1) 국내 연사

구분	강의 시간	금액	비고
국내 연사	1시간 이내	40만원 이하	연사의 직무 및 직급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시간 초과	40만원 이상	

2) 해외 연사의 초청경비는 국제 행사시에 국제협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한다.

제 5 조 (여비 등의 지급) 본회는 제2조에 의한“토론회 등”에 주관 등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연구원/직원
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 연구원, 기업체 차장급 이상 직원 ,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정부출연연구소 선임급 연구원, 기업체 차장급 미만 직원 ,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회계) 본 여성위원회의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제 7 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8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2018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